



새수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수영구보

호외 제706호 2023. 5. 10.(수)

훈령

○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1

고시

○도로명주소 고시-----5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
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3년 5월 10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80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중 공간정보란에 위성영상의 등급란에
공개제한의 분류기준란 중 “4m”를 “1.5m”로 하고,

“ 0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
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”을 신설하며,

공간정보란에 위성영상의 등급란에 공개의 분류기준란에

“ 0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
만 포함 가능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											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[별표 1]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비공개</td> <td style="width: 90%; 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개 제한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성 영 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※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</td> </tr> </table>	비공개	(생 략)	공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	위 성 영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※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③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[별표 1]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비공개</td> <td style="width: 90%; 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개 제한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15m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성 영 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</td> </tr> </table>	비공개	(현행과 같음)	공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15m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	위 성 영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
비공개	(생 략)												
공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												
위 성 영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※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												
비공개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공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15m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												
위 성 영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----- ○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												

◆ 제안이유

위성영상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국가정보원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비상설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◆ 주요내용

- 가. 공간정보심의위원회 비상설 규정 신설 (제7조)
 -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
- 나. 공간정보 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정비(위성영상 분야) (별표 1)
 -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4m에서 1.5m로 완화
 - 위성영상 보안처리 대상은 국정원 또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
 -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포함한 위성영상 온라인 배포 가능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-34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
수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수영로554번길 12등 3건

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지 참조(3건)					

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 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	비고 (지번주소)
별지 참조(0건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61)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(www.suyeong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5. 1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